

검 토 보 고 서

2022. 9. 23. (금)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2021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안 건 명

- 2021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22년 9월 5일(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22년 9월 13일(화)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검토보고]

2021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I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마 포 1 번 가 연 구 단	859,720,000	860,578,630	860,578,630	0	100%

※ 징수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나.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마 포 1 번 가 연 구 단	1,533,293,000	1,102,131,538	0	192,772,884	238,388,578	71.88%

※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집행잔액	집행잔액원인별 금액					
		보 조 금 정 산 잔 액	예 절 감 산 액	계 획 변 경 등 집 행 사 유 미 발 생	낙 찰 차 액	지 출 잔 액	예 비 비
마 포 1 번 가 연 구 단	238,388,578	0	6,582,000	0	0	231,806,578	0

라.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 70% 미만 기준, 단위 : 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마 포 1 번 가 연 구 단 (4 건)	마포1번가 정책 소통 제도 운영	25,060,000	14,396,820	0	0	10,663,180	57.45%
	주 민 참 여 예 산 운	415,840,000	237,116,542	0	0	178,723,458	57.02%
	마 포 도 시 문 제 해 결 포 럼	158,595,000	58,322,688	0	100,272,312	0	36.77%
	주 요 정 책 개 발	83,500,000	50,978,480	58,000,000	0	32,521,520	61.05%

II 검토의견

1. 2021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결산

- 2021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억 6,057만 8,630원으로 징수율은 100%임.
- 2021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3,329만 3,000원이며, 지출액 11억 213만 1,538원으로 집행률은 71.88%임.
- 집행잔액은 2억 3,838만 8,578원이며, 집행잔액원인별 금액은 예산절감액 658만 2,000원, 지출잔액 2억 3,180만 6,578원임.
- 집행률 저조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집행률이 57.45%인 마포1번가 정책소통 제도 운영 등 총 4건임.

2. 검토의견

- 검토의견으로는
2021년 마포1번가연구단은 구민의 바람이 정책이 되는 행정환경조성을 위해 2개 정책사업목표와 주민제안 구정 반영, 민관협치 실행사업 발굴 등 4개의 단위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작년대비 성과달성도는 50%에 불과하며,
- 마포1번가 정책소통 제도 운영,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집행률이 저조한 4개의 사업은 해당사업의 부실화와 예산집행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예산이 70% 미만으로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마포1번가연구단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 같은 계속사업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및 예산이 제대로 이관되어 행정의 공백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를 재배치 받은 부서에서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업방식에 대해 많은 고찰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결산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게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임.
- 일반적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단계보다 다소 소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¹⁾에 따른 재정수지균형의 적정성, ‘예산 한정성의 원칙’²⁾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³⁾에 따른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 명시·사고이월, 예비비 사용, 예산의 초과지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모든 부서가 물품 구매시 계약서 작성 및 가격비교 철저를 개선 및 권고한 만큼 계약 세부내용의 비교 분석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을 통해 증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하는 개념.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3)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